

PCT(특허협력조약)의 개선에 관한 워킹그룹의 설치

특허협력조약(PCT)은 궁극적으로는 세계 특허 시스템의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국 특허청은 PCT총회에서 PCT개선 작업이 개시되는 것을 환영한다. 또, 3국 특허청은 PCT수리관청 또는 PCT국 제기관으로서도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PCT 개선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에 다시금 인식했다.

PCT시스템의 성공이 출원증가를 담당하는 3국 특허청은 업무부담의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3국 특허청은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임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했다.

그 결과, 3국 특허청은 워킹그룹의 설립을 결정하고 이 워킹그룹에서 긴급과제에 대하여 대처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워킹그룹에서는 3국 특허청의 다양한 입장을 명확화하며, 기타 PCT개선책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WIPO특별위원회에 대하여 제안을 하기로 했다.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정보교환

3국 특허청은 종래부터 선행기술 문헌조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의 교환의 도입을 도모해 왔다. 3국 각 심사관을 위한 공통의 문헌 리소스와 신기술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툴(tool)에 주력해 왔지만, 연속된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정보교환을 하며, 미정비된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신규도입을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확인했다.

금후에도 전문가에 의한 워킹그룹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3국 공통의 정보기반의 구축에도 노력한다.

첨단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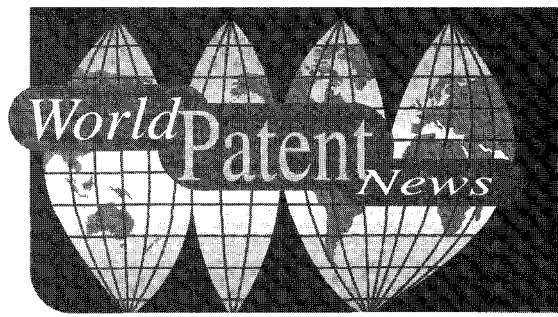
(1) 비즈니스모델 특허관련 특허출원

USPTO(미국특허상표청)과 JPO(일본특허청)은 작년부턴 비즈니스모델 관련출원에 관하여 가상 사례를 이용한 특허성(特許性)의 미일공동비교연구를 행하여 그 결과를 올 6월에 발표했다. 또, EPO(유럽특허청)도 포지션 페이퍼(Position Paper)를 제출하여 이 비교연구에 공헌을 했지만, 유럽의 비즈니스모델의 특허성에 관한 연구는 미일과 비교하여 동일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 비교연구의 결과, 비즈니스모델 관련분야의 특허성의 판단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문제는 이 분야에서 선행기술의 검색이 곤란하다고 하는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이번 모임에서는 비즈니스모델관련 분야에 있어 각국 특허청의 검색 도구의 유효성을 비교하기 위해, 이분야의 PCT 출원 20건 정도를 이용하여 공동 검색 프로젝트를 개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또, 동 프로젝트의 상세한 부분에 대하여 합의함과 동시에 내년 1월까지 개시하는 것에 합의했다.

(2) 유전자관련발명

3국특허청은 유전자관련발명에 있어서 특허성에 관한 비교연구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비교연구는 「상동성검색(Homology Search)의 결과에 근거하여 기능을 추정한 유전자관련발명」에 관한 것이다. 보고서에 의하여는 일본특허청이 나머지 두 특허청에 전자 데이터를 제공하고, 3국 웹사이트에서 공표하는 것으로 했다.



3국특허청은 비교연구 결과 밝혀진 유전자관련발명에 있어서 심사실무의 차이가 큰 것은 판례법을 포함하는 각국/지역의 법제도의 차이에 근거한다는 데에 인식이 일치한다.

3국특허청은 바이오테크놀로지관련 발명에 있어 특허 정책의 폭넓은 조화에 공헌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EU, 공동특허제 추진

나라마다 천차만별인 유럽의 특허제도를 단일화하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유럽에서 특허권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유럽의 특허제도는 그만큼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럽의 비효율적인 특허제도를 개선해 단일화된 공동특허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특허제도 개정을 위한 유럽 각국의 정치적 합의 도출 역시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서 앞으로의 논의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독일 뮌헨에서는 유럽특허제도 개정을 위한 회의가 열려 70년대 이후 유럽의 특허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안을 모색했다.

최근까지 유럽에서는 특허제도와 관련해 특정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할 것인지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기준에만 관심을 기울여왔을 뿐 신청절차 등과 같은 제도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

그 결과 유럽의 특허제도는 신청 절차상 엄청난 비효율을 양산해 왔다. 일반적인 특허권을 내는데 유럽에서는 4만9000유로의 비용이 든다. 이에 비해 미국에

서는 1만330유로, 일본에서는 1만6450유로면 된다.

특허권 신청을 위해 EU의 11개 공식언어로 번역하는데 필요한 비용만도 1만7000유로다. 일본에서 특허신청에 들어가는 총비용보다도 비싼 셈이다.

또한 특허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국의 사법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진행되는 소송에서 일관된 판결이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다.

유럽비즈니스기구인 유니스의 딕 허덕 사무총장은 "현재의 제도에서 특허를 신청할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5배 비용과 10배의 시간이 든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유럽집행위(EC)에서도 현재의 제도가 연구활동과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용부담을 줄이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EU전체 회원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공동특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조율이 필요하다. 특히 소송과 관련한 문제를 각국의 법정에서 유럽공동법정으로 이관하는 것은 예전 같으면 국가간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내달 프랑스 니스 열리는 유럽장관회의에서는 특허제도에 관한 문제도 안전에 포함시켜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유럽공동특허제도를 위해서는 우선 이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뮌헨 회의에서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가 소프트웨어와 비즈니스모델(BM)에 대한 특허권 인정이다. 이 문제는 기술적 접근 보다는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풀릴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협의가 어려운 뮌헨 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미국 회사들이 이미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특허를 상당수 출원중인 것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결정이 더이상 지체되어서 안된다. 늦으면 늦을수록 유럽에는 손해, 경쟁국에는 이익이다.

한·일 특허청, 양국 특허제도 통일화 추진키로 합의

- 한·일 특허청은 양국의 특허제도가 기술이전 및 무역, 투자의 촉진을 통해 양국 경제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양국 특허청이 양국의 기업 및 출원인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특허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양국간 특허제도의 통일화 노력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 선행기술조사사업을 반도체기술 분야 등으로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기로 하였고 양청의 특허 기술정보에 관한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양국의 출원인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특허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특히, 입내규 특허청장은 한·일·중 3국간의 지재권협력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자회의의 외는 별도로 3국이 합동으로 특허청장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 이에 대해 일본측도 한·일·중 3국간 협력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면서 추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한·일간 국제특허출원(PCT) 절차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일본어로 작성된 국제특허출원서를 특허청에서도 수리하여 일본 특허청에서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 양국은 또한 일본 특허청에 접수되는 국제특허출원에 대해서 한국 특허청에서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밖에 한·일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공동체(APEC)등 국제무대에서 각종 지재권 규범논의과정에서 양청간 공조체제를 계속유지해 나가고, 점증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에서의 양국 기업체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 특허청은 이번 한·일 특허청장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국간 특허제도를 통일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양국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지식재산권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하는 전기를 확보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다양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간 특허제도의 통일화를 적극 추진해나가고 세계 제4위의 특허출원대국 및 세계제일의 특허전산망 구축을 통한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한, 중, 일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과 전세계의 특허제도의 실제적 통일화 사업을 적극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 특허관리 사각지대”... 특허출원 전체 0.5%

중요한 연구결과와 특허 양산의 보고(寶庫)여야 할 우리나라 대학이 제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99년기준으로 대학의 특허출원 건수는 총 423건으로 전체의 0.52%(전체 8만64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연구인력의 34%인 4만5000여명이 소속돼 있고 연구개발비의 9.4%인 1조2000억원을 쓰는 전국 314개 대학(전문대 포함)이 출원한 것. 올 10월까지 380건에 거치고 있다.

특히 대학 특허출원과 등록은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대 서울대 등 3개 대학에 한정돼 90% 이상이 이들 3개 대학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대학들은

특허업무에 무관한 실정이다.

설령 정부나 민간연구소와 달리 대학은 물리나 화학 등 기초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 집단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현재 대학의 특허관리는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대학 당국의 특허에 대한 인식 부족과 특허 대신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평가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정부 당국의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작용, 대학의 '특허 무관심'이 나타났다는 평가다.

실제로 대학 가운데 특허 관련 인력을 두고 있는 곳은 포항공대와 한국과학기술원 정도 뿐이다. 그나마 이들도 변리사와 연결하는 초보적인 정도의 특허 업무를 수행할 뿐 전담하지 않고 있다.

김선정 동국대 법대 교수는 "현재 서울대조차도 전담 인력이 없는것으로 안다."며 "미국 스텐포드대 학이 30여 명의 전담직원을 두고 기술이전에 나서는데 비해면 우리는 초보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때 연구자의 국내외 발표 논문수를 주요판단 근거로 삼는 것도 문제점이다. 박한오 바이오니아 사장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곧 교수로 하여금 '논문을 위한 논문'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많은 연구 자원이 사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설령 대학 교수들이 특허를 확보한다고 해도 고비용의 출원비용과 당국의 인식 부족으로 해외출원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곽치영 의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99년까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들이 2개국 이상의 특허 출원을 희망한 49건 중 3건은 미국과 일본, 나머지 46건은 미국에만 출원이 의결됐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KAIST교수의 특허 가운데 해외 출원이 보류된 나라는 총 69개국에 달했다. 예컨대 '이동원문의 홀로그래프를 측정해 음향특성을 영상화하는 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논문을 쓴 한 교수는 미국과 독일에 특허출원을 희망했으나 출원료와

등록 유지비가 부족해 미국만 한정됐다.

김선정 교수는 "대학이 경쟁력을 갖출려면 학교내 특허 분야를 전담할 분서나 인력을 배치해 우수한 연구결과가 출원돼 보호받을 수 있고 외부에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매일경제

인터넷 특허출원 중복 심각

게임, 오락분야 72%가 중복 ... 외국사에 제소 당하면 치명타

인터넷업계의 특허 중복이 심각하다. 국내 인터넷 업체 들이 출원해 놓은 특허 10개중 4개가 중복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디어플라자(www.ideaplaza.co.kr 대표 주진용)가 최근 특허청 및 관련 업체들이 공개한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한 '국내 비즈니스모델(BM) 특허출원 현황'에 따르면 총 731건의 특허 신청건수 중 292건이 중복돼 있다.

이 같은 특허중복은 특허를 먼저 획득한 기업에게는 성장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특허획득에 실패하거나 나중에 출원된 기술로 확인될 경우기업 존폐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특히 미국 등 특허 문제에 치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계 기업에게 제소 당 할 경우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주진용 아이디어플라자 사장은 "국내 인터넷업체 들은 특허출원만 해놓으면 마치 특허를 받아놓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다른 회사에서 먼저 특허를 획득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미리 특허 진전상황을 확인해보고 법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물류·보안·인증업계 중복문제 가장 심각

국내 BM특허 출원건수는 미국의 4500여건의 7분의 1수준. 양국간 국력차로 볼 때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국내에서 출원된 특허중 상당수가 중복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인터넷업체가 BM특허 획득을 등한시해 온 측면이 있다.

중복문제가 가장 심각한 분야는 게임·오락분야. 기술분쟁의 우려 때문에 개별회사 이름과 기술을 공개하긴 어렵지만 18건의 특허 중 72%인 13건이 중복됐다.

물류·운송분야에서는 7건중 5건이 중복돼 있다. 비슷한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먼저 특허를 획득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특허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해킹 바이러스 문제로 가장 활발한 창업붐을 이뤘던 보안·인증분야에서는 52건중 31건이 중복돼 있어 내년쯤이면 한바탕 특허분쟁 회오리가 불어닥칠 가능성이 높다.

예약·관광분야에서 13건중 7건이 중복돼 있는 것을 비롯해 △통계·분석·투표 30건중 15건 △금융서비스 38건중 20건 △광고·마케팅 188건중 77건 △판매·구매·중계 136건중 44건 등이 중복돼 있다.

외국계 업체들 국내특허 잇달아 획득

특허분쟁의 골치 거리가 될 만한 요소는 외국업체들의 동향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인터넷업체들의 특허출원 결과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또 직접 장사가 될 만한 기술분야에서 46건의 BM특허를 우리나라특허청에 신청했다. 광고·마케팅분야에서 14건의 특허신청을 해 놓은 것을 비롯해 △금융서비스 7건 △판매·구매·중계 6건 △보안·인증 3건 △원격관리·원격제어 3건 등 다양하다.

이들은 자신이 확보한 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사용한 업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특허문제를 제기해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다. 협상이 잘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 피제소 업체에게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낭

비하게 할 수 있다.

철저한 대비책 필요

주진용 사장은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다른 곳에서 비슷한 기술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외국업체들의 기술동향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를 하고 신청을 할 때도 충분한 증빙자료를 덧붙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업체는 또 유능한 변리사를 선정해 특허시장동향과 특허구성요소 등을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소송에 휩싸일 수 있는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강점 등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단 분쟁이 붙으면 기업신뢰도에 타격을 주는 만큼 속전속결로 타협점을 찾는 전략도 필요하다.

지적재산권 관리부처 중복 "효율성 저해"

지적재산권이 일관된 관리체계 없이 부처별로 분산 관리돼, 정책효율성이 떨어지고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으며 산하기관을 양산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지적재산권 통합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위원장 박광태)의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인기, 맹형규, 신영국 의원은 지적재산권이 특허청 등 5개 부처 12개 법률로 분산관리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적재산권과 관련, 특허와 실용신안상표반도체설계는 특허청이, 소프트웨어는 정보통신부, 종묘는 농림수산부, 저작권은 문화관광부, 외국기술 등록은 산업자원부가 관리하고 있다.

관련법률도 특허법, 실용신안법, 소프트웨어개발

촉진법, 저작권법 등 12개 법률에 이른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직속으로 지식재산권리위원회를 설치해 지적재산권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대만은 '지혜재산청'이, 중국은 국무원 직속 '국가지식재산권청'에서 각각 지식재산권 전반을 통합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부처별 분산관리로 국가경쟁력을 주도하는 지식산업 인프라 구축이 어렵고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신지식재산권의 업무처리에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처간 중복보호로 보호내용이 상충돼 권리간 충돌이 발생하거나 보호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지적재산권의 업무를 특허청으로 일원화하거나 부처별 중복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협의기구 구성 등의 통합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BM특허분쟁 대비 서둘러야

격화될 BM 특허 분쟁에 대비해야- 미국의 델 컴퓨터사가 최근 4/4분기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미국의 하이테크 기업 가치를 대변하는 나스닥 주가가 한차례 출렁거렸다.

1999년에만 180억불의 매출과 15억불의 순익을 실현한 미국의 대표적인 PC 전문 메이커의 위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것의 핵심은 델 사의 주문형 PC의 생산 및 판매 방법이다.

하지만,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미국에서 4개의 BM 특허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BM 특허 망의 완벽한 구축을 위하여 주변 특허를 38건이나 출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델 사는 기술 혁신 속도가 매우 빠른 개인용 컴퓨터 분야에서는 거의 예외적으로 경쟁 업체의 부상을 막는 매우 공세적인 무기로 BM 특허를 활용하고 있다.

IBM과는 크로스 라이선싱을 통해 IBM 소유의 특허를 확보하여 부품 분야의 취약점을 보강할 수 있었던 반면에, 최대의 라이벌인 컴팩사에게는 델 식의 경쟁력 있는 영업방법은 특허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BM 특허에 대하여 아직도 찬반 양론이 있지만, 세계적인 대세의 흐름은 이미 판가름이 났다.

과거에 의약품 발명은 윤리적인 이유에서, 농업 관련 발명은 인류의 식생활 관련이기 때문에 라는 논리로 특허로 인정하는 데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들은 새로운 분야에 대해 특허를 인정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인류 생활을 좀더 윤택하게 만들었다는데 대해서 이제는 이견이 없다. 이제 전세계의 유력 기업들은 BM특허 전담팀을 설치하고 자사의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우리 나라도 금년 들어서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BM 특허의 출원 이 대단히 활발하다. 특허청에서는 금년에만 BM 특허 출원건수가 모두 5천여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델사와 같이 기존의 제조업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여 특허 획득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반면에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 광고와 같은 좁은 분야에서 지나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특히, 금년 7월부터 전자 상거래 관련 BM 특허가 특허청의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되고 8월부터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공표 되면서 BM 특허의 권리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매우 많은 특허 분쟁일 것이다.

따라서, 벤처기업들은 한편으로는 경쟁업체의 BM 특허를 적극적으로 모니터하면서 격화될 분쟁에 대비하고 자사의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타 회사의 제품과 차별화 되는 주변 기술, 그리고, 자사 고유의 영업방법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 적극적인 BM 출원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특허청, 「한·중·일 지재권 협력협의체」 구성 추진

- 한·중·일 3국간 지재권 협력의 새로운 전기 마련 -

임내규 특허청장은 중국 서안(西安)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행정을 총괄하는 지식재산국 지양 잉(Jiang Ying) 국장과 제7차 한·중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하여,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지재권 협력협의체」 구성을 중국측에 제의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기로 할

- 임내규 특허청장은 중국 서안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행정을 총괄하는 지식재산국의 지양 잉(Jiang Ying) 국장과 제7차 한·중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 금번 회의에서는 그 동안의 한·중 특허청간 6차례 개최된 특허청장 회의 및 심사관 교류, 정보자료의 교환 등 협력을 바탕으로, 양청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고자하는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특허청장은 금번 회의를 통하여 동북아 국가간 지재권 협력의 강화, 출원인등 지재권 서비스 수요자의 편익증대, 한·중 양청간 협력관계의 심화·발전에 초점을 두었다.
- 먼저, 최근 ASEAN+3(한, 중, 일)회의가 개최되고, 동북아지역 국가간의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분야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동북아 지재권 협력협의체」 구성을 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양청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양청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지재권 분야협력의 현지 창구역할을 수행하

기 위한 양청 직원의 상주파견을 제의하고, 상호 진지하고 깊이 있는 검토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 또한, 지난 9월 WIPO 총회에서도 주창한 바 있는 각국 특허청간 심사결과의 상호인정을 위한 전 단계로서 한·중 특허청간 「선행기술 공동조사사업」의 실시를 제의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 및 범위 등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를 진행키로 하였다.
- 이 사업이 실현될 경우, 한·일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동선행기술 조사사업에 이어 두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향후 한·중간의 신뢰구축 및 심사부담 경감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 이외에도, 한·중 특허청에 출원되는 PCT국제출원이 양국에서 모두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PCT ISA/IPEA)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 지정하는 방안, 특허청의 PCT ISA/IPEA 업무수행 및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추진에 따른 심사관 연수 등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특허청은 특허행정 전분야를 전산화한 전자출원시스템(KIPONET)의 구축, 세계 10번째의 PCT ISA/IPEA기관 지정 등 지식재산권 행정 분야에서의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바탕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무대에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동북아 국가간 지식재산권 협력체제 구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 PCT ISA/IPEA: 국제출원에 대해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에서 미리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여 각국의 심사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심사의 통일화 및 질 향상을 도모.
- ♣ 마드리드 의정서: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으로, 현재 46개국이 가입중

<한, 중, 일 지재권 협력협의체 구성추진(안)>

1. 추진배경

- 한중 경제협력이 전면적으로 공고화 되고 있는 현단계에서 양국간 기술이전 촉진 및 무역투자의 확대를 위해서 지재권분야의 협력관계의 확대, 심화가 절실
- 최근 한,중,일 정상은 3국간 지역경제공동체 설립을 목표로하는 공동연구에 착수키로 합의
 - ♣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나라연구소, 중국: 국무원 연구중심이 간사기관이 되어 11월중에 의제발굴등 연구작업이 본격화될 전망
- 21세기 지식기반시대에 지식재산 확대,창출을 통한 한중일의 경제발전과 아시아 번영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중일을 축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협력인프라구축이 절실
 - 장기적으로는 한중일을 중심으로한 동북아 지역경제공동체 발족에 대비

2. 추진방법

- (1) 한, 중, 일 특허청 및 각측이 지정한 지재권 연구소가 주체가 되어 한중일지재권통일화 협력협의체 구성할 것을 제의하고 이를 위해 2001년중 3자특허청장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
 - 각국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이 간사가 되어 통일화 작업이 필요 및 가능한 분야에 대한 의제발굴 및 연구작업 수행
- (2) 중국이 우리측(안)에 동의할 경우, 11월 한, 일특허청장에서도 동아이디어 및 2001년중 3자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제의
- (3) 상기 협의체를 통한 한중일 3국간 공동 연구 및 협력이 가능한 분야

- 특허심사결과의 상호인증을 위한 방안연구
- 특허, 의장등 지재권제도의 통일화 방안연구
- 전통지식, 전자상거래, 지리적표시등 신지재권 분야의 국제규범형성의 주도방안연구
- 지재권통일화가 각국의 투자, 무역,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의 공동연구 수행
- 한중일 발명박람회 공동개최등
 - ⇒ 중장기적으로는 ASEAN 연합체와 공동으로 소위 국제지식재산 EXPO와 같은 국제행사도 추진가능
- 지재권 전문인력개발사업의 공동수행

3. 기대효과

- 한, 중, 일 특허청이 주축이되는 동북아 지역특허청(EPO, 유러시아특허청, ASEAN 특허청에 대응) 설립을 위한 기반구축
 - 지역특허청 설립전단계에서는 아시아지역 특허3국으로 기능, 지역 단위의 협력사업 적극 발굴 및 추진(EPO, 미국, 일본 특허청이 축이 되고 있는 3국특허청에 대응)
 - 양자회담의 한,중,일 특허청장간 3자회담 정기적 개최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보자료, 인적교류사업등 낮은수준의 교류협력을 보다 확대심화할수 있음
- WTO, WIPO, APEC과 같은 다자무대에서 각종 국제현안 및 신지재권 이슈에 대해서 공동연구를 통해 보다 긴밀한 대응이 가능
 - 동북아 경제공동체 발전에 이익이 되는 국제지재권 규범의 주도적 형성
- 한, 중, 일 기업들에 보다 저렴한 비용과 질높은 지재권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제도 및 절차의 통일화가 가능